

제4장 원전주변 민원현황과 대책

제1절 개 요

1. 민원발생 배경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심리와 다수 민원인의 물리적인 행동이 전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원전으로 인해 주변지역 개발이 낙후되었다는 상대적 피해의식, 어획고 감소에 대한 피해보상 기대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가중 등이 민원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전소 온배수와 관련한 어업피해보상 민원이 빈발하면서 어민들은 어장환경이나 설비를 개선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는 손쉬운 보상을 기대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어업피해보상이 어업권 등 재산권 소유자 개인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전체의 공공적 이익보다는 개인보상을 극대화 하려는 일반적인 사회분위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민원 처리실적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원전 가동과 관련된 민원은 총 110건이 발생하여 2002년말 현재 108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중에 있다.

구 분	총 발생건수	조 치 완 료	진 행 중
고리원자력	16	16	-
영광원자력	59	58	1
월성원자력	11	11	-
울진원자력	24	23	1
계	110	108	2

주) 한수원(본사) 접수민원 기준

제2절 민원내용 및 해소방안

1. 민원의 유형

가. 경제적 보상 요구

- 원전 온배수로 인한 주변해역 어업 피해보상
- 원전 해안구조물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
- 원전 인근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로 인한 상업소득 감소 보상
- 원전 주변지역 부동산가격이 낮아짐에 대해 타 지역과의 지가 차액 보상
- 원전 건설 종료후 건설인구 감소로 인한 빈 방 및 영업손실 보상
- 지역지원사업 확대 시행 및 배분기준 조정

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요구

- 주변지역주민 집단이주
- 환경방사능감시기 추가설치 및 방재장비 지급
- 주변지역주민 건강 진단 및 역학조사 실시

-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반대
- 안전장치에 의한 발전정지를 방사능누출 사고로 인식

다. 법령 및 제도개선 요구

- 개발제한구역 해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

2. 해소방안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무리한 요구는 주민을 이해·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1997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지역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원전 주변지역을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보상심리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원전 직원 채용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원전 온배수로 양식한 어류를 인근 해역에 방류함으로써 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제고를 통해 민원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환경친화형 원전운영을 목표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원전주변 기형가축 데이터베이스화, 해양환경조사 개선, 환경감시설비 보강 등 각종 환경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이해기반을 조성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제3절 주요 현안민원 및 대책

1.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민원

1990년부터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과 전남 영광군 흥농읍, 백수읍 어민들이 영광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하여 김양식장 등에서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당시 한전)은 어민들과 협의하여 여수수산대학에 피해조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1993년 11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시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995년에 3백9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어민들과 합의하였으며, 1996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4개호기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실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고 1996년 10월부터 어민이 추천한 군산대학교와 한전이 추천한 한국해양연구원이 1998년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1998년 12월부터 약 24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영광5,6호기 건설과 함께 온배수 영향을 근본적으로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류제를 건설하였고, 방류제 건설과 영광5,6호기 운영으로 인한 온배수영향 여부에 대해 영광군 해역 광역해양조사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5년 4월 27일까지, 고창군 해역 광역해양조사는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12월 25일까지 조사중에 있다.

가. 영광지역 광역해양조사 진행현황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영광 5,6호기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를 영광 6호기 가동후 2년까지 실시하고, 어업피해가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기로 어민들과 합의하면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1997년 시행된 4개호기 실측조사 대비 피해범위(남쪽 12km)의 확장여부를 중간보고서에서 평가하여 추가피해가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2002년 5월 15일, 중간보고서(초안)을 접수하여 한국해양학회 및 한국수산학회 소속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갯벌의 열 공급 영향 해석 오류로 과다한 온배수 확산범위가 산정되는 등 기술적 문제점 외에 감정평가에 필수적인 어업권별 생산량 조사가 누락되는 등 계약적 문제점도 발견되어 수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학술적인 견해의 차이점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며 계약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중간보고서 관련 민원해결 방안을 어민들과 별도 협의 중에 있다.

나. 고창지역 광역해양피해조사 진행현황

영광지역 광역해양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영광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영향 및 방류제/돌제 축조로 인한 고창지역 해양변화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보상하기로 어민들과 합의하면서 중간보고서에서 컴퓨터 수치해석으로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추가 확산범위 내 어업권에 대하여는 우선 용자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조사기관인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가 2002년 6월 25일,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한국해양학회 소속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치해석 결과가 동 해역에 대한 기존 환경조사, 항공탐사 및 인공위성 관측결과에서 제시된 일반적 경향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내용 확인을 위해 원시자료 제출을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제출의무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라 지원금 용자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 해결시까지 는 중간보고서를 검증된 보고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실측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어민지원 성격의 지원금을 용자하기로 어민대표와 합의하고(2002.10.26), 지역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 230억원에 달하는 용자를 시행하였다

2. 울진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영향 조사

1998년 6월 울진원전 인근 어민들이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실태조사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어민들과의 합의하에 한국해양연구원과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2000년 4월 28일부터 2002년 4월 27일까지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용역 책임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2002년 4월 27일 최종보고서(초안)을 접수하여 한국해양학회 소속 자문단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피해를 산정시 각 어장의 피해율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참전복 등 5개 실험대상 산물의 실험결과를 일괄 평균하여 적용함으로써 수산물 종별 특성을 무시하였고, 피해를 산출 근거인 생물검정실험 결과 등 조사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조사와 유

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최종보고서(초안) 검사가 장기간 지연되자 어민들과 합의하여 어장별 특성에 따라 피해예상 금액의 일부(36억원)를 우선 보상하거나 용자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였다.